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7. . . (제 회)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동산등기법 상의 ‘예고등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한 예고등록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관련디자인권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등록제도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당사자 직접 방문시 인감증명 제출을 생략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록신청 제출서류를 구체화하며, 출원중에 지분을 정한 경우 설정등록시 지분약정 절차를 생략하는 등 등록신청 관련 제출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등록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및 구체화(안 제22조 제1항·제7항)

- 1) 등록신청의 당사자인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도 등록원인서류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하던 것을 등록원인서류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생략하도록 함.
-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의 근거를 포괄적으로 정하였던 것을, 신청의 종류 및 대상자에 따라 구체화하는 등 등록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함.

나. 설정등록시 지분약정 절차 생략(안 제26조)

출원중 지분을 설정하여 그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지분약정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던 것을, 설정등록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부동산등기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제6조·16조·19조·47조)

1) 등기명의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부동산등기법의 ‘예고등기제도’가 폐지(‘11년)됨에 따라, 1심 법원 축탁에 의한 예고등록관련 조항을 삭제함.

2)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디자인보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관련 디자인권 등이 있는 등록신청(제16조) 규정을 정비하고, 특허취소신청 관련 등록사항(제3조)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하는 등 법령을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의 확정결정 제3조제2항제2호의2 중 “ 「특허법」 제132조의13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을 “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의 확정결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련디자인권이나 같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관련디자인권”으로, “관련디자인권이나 통상실시권”을 “관련디자인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용실시권 설정

제1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제22조제1항제5호 중 “제2호”를 “제2호와 제2의2호”로 하고, 같은 항 제

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청인”을 “다음 각목 신청인”으로, “본인 서명사실확인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특허권등의 권리이전등록, (근)질권·실시권(사용권)의 설정등록,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등록의무자

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록원인으로 하여 권리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 전원

제22조제1항제7호에 다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인 분할을 등록원인으로 권리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

라. 등록권리의 공유지분을 확인하거나, 설정등록시 지분을 설정하는 경우 : 등록권리자 전원

마.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불이익이 발생하는 신청인

바. 외국인이 등록명의인 표시통합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

사. 등록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 그 제3자

제2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제7호의 서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청구항, 디자인 또는 지정상품 중 일부를 말소하려는 경

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특허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위하여 동일한 신청인이 특허권의 등록 신청과 동시에 실용신안권의 포기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3. 신청인(법인은 제외한다) 전원이 등록관청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원이 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한다) 사본에 기명후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경우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출원중 설정된 지분의 변동이 없는 경우, 등록권리에 대한 지분의 약정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47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고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마쳐져있는 예고등록의 말소절차에 관하여는 제4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등록사항) ① 「특허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2. (생략)</p> <p>2의2. 「특허법」 제132조의13 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p> <p>3. ~ 6. (생략)</p> <p>② 「실용신안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2. (생략)</p> <p>2의2. 「실용신안법」 제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3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결정</p> <p>3. ~ 6. (생략)</p> <p>③·④ (생략)</p> <p>제6조(예고등록) ① 특허권과 그 밖에 특허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p>	<p>제3조(등록사항) ① ----- ----- -----.</p> <p>1. 2. (현행과 같음)</p> <p>2의2.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의 <u>확정결정</u></p> <p>3. ~ 6.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2. (현행과 같음)</p> <p>2의2. -----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의 <u>확정결정</u></p> <p>3. ~ 6.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예고등록) ① ----- ----- ----- -----.</p>

1. 등록의 원인이 무효나 취소
라는 이유로 등록의 말소 또
는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
우. 다만, 등록 원인의 무효나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 대
항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
다.

2. ~ 7. (생략)

② 실용신안권과 그 밖의 실용
신안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1. 등록의 원인이 무효나 취소
라는 이유로 등록의 말소 또
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다만, 등록 원인의 무효나 취
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
항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
다.

2. ~ 7. (생략)

③ 디자인권과 그 밖의 디자인
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
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1. 등록의 원인이 무효나 취소
라는 이유로 등록의 말소 또
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다만, 등록 원인의 무효나 취

<삭제>

2. ~ 7. (현행과 같음)

② -----

-----.

<삭제>

2. ~ 7. (현행과 같음)

③ -----

-----.

<삭제>

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
항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
다.

2. ~ 6. (생략)

④ 상표권과 그 밖의 상표에 관
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1. 등록 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이
하 “국제등록”이라 한다)의 원
인이 무효나 취소라는 이유로
등록·국제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다
만, 등록·국제등록 원인의 무
효나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
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 5. (생략)

제16조(관련디자인권 등이 있는
디자인권의 등록 신청) 디자인
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디자인권에 「디자인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련디자
인권이나 같은 법 제99조제1항
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있을 때

2. ~ 6. (현행과 같음)

④ -----

-----.

<삭 제>

2. ~ 5. (현행과 같음)

제16조(관련디자인권 등이 있는
디자인권의 등록 신청) -----

----- 관련디자인
권-----

에는 그 관련디자인권이나 통상 실시권에 대해서도 같은 사항의 등록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1. 2. (생략)

<신설>

제19조(예고등록의 촉탁 및 방법)

① 법원은 제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예고등록을 특허청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2. (생략)

<신설>

3. 4. (생략)

5. 신청인(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제2호에 따른 제3자 및 제

----- 관련디자인권-----

-----.

1. 2. (현행과 같음)

3. 전용실시권 설정

제19조(예고등록의 촉탁 및 방법)

<삭제>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①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3. 4. (현행과 같음)

5. -----
- 제2호와 제2의2호-----

3호에 따른 상속인이나 일반 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생략)

7.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가. 둘 이상의 청구항, 디자인 또는 지정상품 중 일부를 말소하려는 경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특허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위하여 동일한 신청인이 특허권의 등록 신청

6. (현행과 같음)

7. 다음 각목 신청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단서 삭제>

가. 특허권의 권리이전등록, (근)질권·실시권(사용권)의 설정등록,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등록의 무자

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록원인으로 하여 권리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 전원

과 동시에 실용신안권의
포기를 원인으로 한 말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8. (생 략)

② ~ ⑥ (생 략)

<신 설>

다. 법인 분할을 등록원인으
로 권리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 등록의무자와 등록
권리자

라. 등록권리의 공유지분을
확인하거나, 설정등록시
지분을 설정하는 경우 : 등
록권리자 전원

마.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
우 : 불이익이 발생하는 신
청인

바. 외국인이 등록명의인 표
시통합관리를 신청하는 경
우 : 신청인

사. 등록신청서에 제3자의 동
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 그
제3자

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제7호의 서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경우 제출을 생
략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청구항, 디자인 또는 지정상품 중 일부를 말소하려는 경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특허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위하여 동일한 신청인이 특허권의 등록 신청과 동시에 실용신안권의 포기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3. 신청인(법인은 제외한다) 전원이 등록관청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원인이 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한다) 사본에 기명후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경우

제26조(지분 등의 기록) ①·②
(생략)
<신설>

제26조(지분 등의 기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출원중 설정된 지분의 변동이 없는 경우, 등록권리에 대한 지분의 약정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47조(예고등록의 말소) ① 제1

제47조(예고등록의 말소) <삭

심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이나 소의 취하(取下),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예고등록의 말소를 특허청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 제6조제2항제1호,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6조제4항제1호의 소를 각하(却下)한 재판 또는 소를 제기한 자의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2. 소의 취하가 있는 경우

3. 청구의 포기가 있는 경우

4. 청구의 목적에 의하여 화해가 있는 경우

② (생략)

③ 특허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외에 등록의 원인이 무효나 취소라는 이유로 등록을 말소하거나 회복시킨 경우 또는 그 밖에 예고등록의 원인이 된 사실이 소멸한 경우에는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

② (현행과 같음)

<삭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등록과	
연 락 처	042-481-5241